

○ 국토교통부고시제2023-500호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20조 및 「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 제20조에 따라 “2023년도 건물·수송·건설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 지정고시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357호 및 397호)”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.

2023년 08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

2023년도 건물·교통·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

관보내용	변 경	비 고
- 관리업체 : 에이디에프케이아이피2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- 업종 : 교통(화물) -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동탄물류로 48(신동) - 적용기준 : 제2호	<삭제>	지정취소
- 관리업체 : 삼화운수합자회사 - 업종 : 교통(화물) - 소재지 :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103 - 적용기준 : 제2호	<삭제>	지정취소

□ 문의처

○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: 044-201-3263